##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44

발의연월일: 2021. 4. 13.

발 의 자:김정호·김병욱·김윤덕

박상혁 • 서동용 • 신정훈

어기구 • 윤후덕 • 이병훈

임종성 • 전재수 • 정춘숙

허종식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군관리계획은 시·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시장·군수 등이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및 경관 등에 관한 계획으로, 관할 시·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구속력 있는 계획임.

한편, 「농지법」은 농지를 전·답뿐만 아니라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정의하면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시장·군수 등이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지이용계획은 각종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성격의 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과 달리 관할 지역 내의 농지에 대하여 구속력을 미치는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이용계획에 규정된 내용을 각종 사업을 통해 실효성 있게 구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아울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토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농림지역 등 농지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이용계획에 부합하게 입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토지의 보전·관리를 도모하고 농지이용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

#### 법률 제 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효율적 이용과"를 "보전·관리와 효율적 이용 및"으로한다.

제25조제1항 중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을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농지법」에 따른 농지이용계획(농림지역 등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에 한정한 다)"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	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	원칙)
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	
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1.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	1
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u>효</u>	<u></u> 보
<u>율적 이용과</u> 원활한 공급	전·관리와 효율적 이용 및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① 도시·군관리계획은 <u>광역도</u>	① <u>광역도</u>
<u>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u> 에	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부합되어야 한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이용계
	획(농림지역 등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대하여 수립하는
	<u>도시·군관리계획에 한정한다)</u>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